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8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강준현 · 김남근 · 박상혁
박범계 · 윤준병 · 진성준
박정현 · 전현희 · 최혁진
김용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과징금 및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나, 유사 법률안인 현행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같은 입찰 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생 략) <u><신 설></u>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 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 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 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u>
<u>② ~ ⑦</u> (생 략)	<u>③ ~ ⑧</u> (현행 제2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